

주택경매 예정통지서

귀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
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, 부득이 아래 경매신청 대상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, 참고바랍니다.

담당자 : 김은혜 과장보 전화번호 : 031-8005-1917

□ 수신인 기본사항

성명	연락처	주소
안 * *	010-81**-****	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길 ** ***** 호

□ 대출 등 정보(2026. 03. 23.기준)

(단위 : 원)

대출		기한이익상실			경매정보	
계좌번호	잔액	사유	사유 발생일	상실일	경매신청예정일	최고 기한
061-36**-****-63	30,000,000	여신거래 기본약관 7조 2항,3항	2024.12.04	2025.05.12	2026.04.07	2026.04.06

□ 경매신청 대상 주택

소유주	소재지
안**	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길 ** ***** 호

※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.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.

2026년 03월 23일

발신인 구성농업협동조합장

주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40

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본 조합 본점(☎031-8005-191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▷ (금융회사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▷ (채무자)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▷ (금융회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▷ 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- 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